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95호
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

‘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’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송인동 61번지 일대 송인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서울특별시

1.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

○ 종로구 송인동 61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

구분	생활권 유형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 (ha)	용적률	층수	건폐율	추진 단계	사업시행 방식	정비 유형	예정구역 지정일
기정	B	11	송인1동	61	2.1	190%	12층 이하	60%	2	주택 재개발사업	전면 개발	2004. 6. 25. (서고시 2004-204)
변경	해 제											

2. 해제도면 : 붙임과 같음

3. 정비구역등 실효사유 및 실효일

○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

○ 실효 일 : 고시일

4. 열람장소

○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8)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82)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

송인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

【 송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도면 】

